

(2025. 4. 24.)

定 款

1977.04.11. 제정	2001.03.28. 개정	2014.02.06. 개정
1977.09.21. 개정	2001.12.11. 개정	2014.04.24. 개정
1979.01.15. 개정	2002.02.23. 개정	2014.08.01. 개정
1981.04.16. 개정	2002.06.04. 개정	2015.04.23. 개정
1981.12.16. 개정	2003.03.11. 개정	2016.05.01. 개정
1982.04.08. 개정	2003.04.02. 개정	2016.05.19. 개정
1983.08.12. 개정	2003.09.17. 개정	2016.08.30. 개정
1983.10.19. 개정	2004.02.21. 개정	2017.02.06. 개정
1985.01.16. 개정	2004.05.20. 개정	2017.03.24. 개정
1985.11.16. 개정	2004.12.30. 개정	2017.06.23. 개정
1986.06.28. 개정	2005.04.21. 개정	2018.07.01. 개정
1988.02.26. 개정	2006.02.23. 개정	2018.08.13. 개정
1988.08.29. 개정	2006.04.24. 개정	2018.10.26. 개정
1990.04.03. 개정	2007.05.14. 개정	2018.12.21. 개정
1992.07.24. 개정	2007.10.19. 개정	2019.03.20. 개정
1993.04.07. 개정	2008.01.01. 개정	2019.06.25. 개정
1993.12.18. 개정	2008.02.18. 개정	2019.10.01. 개정
1994.03.05. 개정	2008.11.26. 개정	2019.10.28. 개정
1995.12.22. 개정	2009.02.24. 개정	2019.11.25. 개정
1996.02.28. 개정	2009.11.11. 개정	2020.02.24. 개정
1996.09.21. 개정	2010.03.01. 개정	2020.04.01. 개정
1997.01.11. 개정	2010.12.09. 개정	2020.10.28. 개정
1997.10.31. 개정	2011.03.01. 개정	2020.12.22. 개정
1998.03.01. 개정	2011.04.18. 개정	2021.05.27. 개정
1998.05.01. 개정	2011.04.20. 개정	2022.01.01. 개정
1998.10.21. 개정	2011.11.01. 개정	2022.03.25. 개정
1999.03.17. 개정	2012.02.21. 개정	2023.08.25. 개정
1999.08.20. 개정	2012.05.25. 개정	2024.04.24. 개정
2000.02.25. 개정	2012.07.22. 개정	2024.07.10. 개정
2000.08.07. 개정	2012.08.30. 개정	2025.03.26. 개정
2000.09.27. 개정	2012.12.28. 개정	2025.04.24. 개정
2001.01.27. 개정	2013.03.01. 개정	

학교 동명문화학원
법인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7.)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개정 2008.11.26., 2011.3.1., 2019.3.20., 2021.5.27., 2022.3.25.)

1. 동명공업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2. 동명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에 둔다. (개정 2016.5.1.)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定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5.27.)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2012.8.30., 2016.5.1.)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5.27.)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에 따른 적립금 및 그 밖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1.5.27.)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5.27.)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10.28.)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라 하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르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8., 2021.5.27.)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개정 2020.10.28., 2021.5.27., 2022.3.25.)

- 1. 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에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 2.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에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10.28., 2021.5.27.)

-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20.10.28.]

제10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 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제3절(삭제)

제13조 삭제 (2007.5.14)

제14조 삭제 (2007.5.14)

제15조 삭제 (2007.5.14)

제16조 삭제 (2007.5.14)

제17조 삭제 (2007.5.14)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8.1.1., 2009.2.24., 2021.5.27.)

1. 이사 10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2. 감사 2명

② 학교의 장은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이사 중 3명은 개방이사로 한다. (개정 2008.1.1., 2009.2.24., 2021.5.27.)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개정 2017.2.6., 2021.5.27.)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다만,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③ 이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선임된 이사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사로 재임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③ 임원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이내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21.5.27.)

③ 삭제 (2007.10.19.)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자격) ①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20.10.28., 2021.5.27.)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신설 2020.10.28., 2021.5.27.)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이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20조의4 삭제 (2007.10.19.)

제20조의5(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27., 2022.3.25.)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7.)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27.)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1.5.27.)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5.27.)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0.28., 2021.5.2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가.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5.27.)

⑤ 삭제 (2008.11.26.)

⑥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1.5.2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27., 2022.3.25.)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관할청의 요구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로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제21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관할청의 요구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로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2.3.25.]

제21조의3(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법인의 임원이 제21조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3.25.]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1.5.27.)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5.27.)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27.)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5.27.)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7.)

② 이사장이 궐위(闕位)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7.)

③ 제2항에 따라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2.21., 2021.5.27.)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5.27.)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5.27.)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5.27.)

제26조의2(상근 임원) 법인의 임원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7.)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1.26., 2011.4.20., 2012.5.25., 2016.5.19., 2021.5.27.)

1.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5.27.)

제28조(이사회 회의 및 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1.5.27.)

②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26., 2021.5.27.)

③ 이사회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30., 2021.5.27.)

[제목개정 2016.8.30.]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5.27.)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5.27.)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5.27.)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5.)

제30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2021.5.2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제31조(이사회 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2021.5.27.)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5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27.)

제4장 수익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개정 2009.11.11.)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21.5.27.)

1. 부동산 임대업
2. 체육, 문화 시설 사업
3. 평생교육사업
4. 주차장업
5. 영상 산업
6. 용역업
7. 그 밖에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목 개정 2021.5.27.]

제32조의2 삭제 (2016.5.1.)

제32조의3(수익사업체의 주소) 이 법인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법인사무소에 둔다. (개정 2016.5.1., 2021.5.27.)

1. 삭제 (2016.5.1.)
2. 삭제 (2016.5.1.)
3. 삭제 (2016.5.1.)
4. 삭제 (2016.5.1.)
5. 삭제 (2016.5.1.)
6. 삭제 (2016.5.1.)

[제목 개정 2021.5.27.]

제32조의4(사회복지사업) 법인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제33조(관리인) ①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개정 2021.5.27.)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7.)

제5장 해산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26., 2021.5.27.)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이 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다른 학교법인이나 그 밖의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8.11.26., 2021.5.27.)

[제목 개정 2021.5.27.]

제36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11.26.)

제36조의2(해산된 법인의 기록물 관리) 해산된 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 법인의 해산인가·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인가·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1. 학적부
 2.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본조신설 2020.10.28.]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7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26., 2016.5.19., 2021.5.27.)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하되,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의 겸임 교원 등의 임용은 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하고, 고등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은 고등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20., 2012.5.25., 2016.5.19., 2018.10.26., 2018.12.21., 2019.6.25., 2021.5.27., 2022.3.25.)

1. 근무 기간

가.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4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2012.7.22.)

마.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급여: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 조건: 교수 시간 및 소속 학부(계열, 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 실적·논문 지도·진로 상담 및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 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조건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학교의 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본부장, 대학원장, 처장,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 등의 보직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1.4.20., 2012.5.25., 2014.8.1., 2018.8.13., 2018.10.26., 2021.5.27., **2025.4.24.**)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21.5.27.)

⑤ 삭제

⑥ 강사의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6.25.)

[제목 개정 2016.5.19.]

제37조의2(고등학교교원의 공개전형)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0항,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등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을 시행한 경우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2021.5.27., 2022.3.25.)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26., 2021.5.27.)

제38조(기간제 교원)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21.5.27.)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임용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5.19.)

제38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4., 2021.5.27.)

1.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54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24., 2021.5.27.)

③ 제54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4.)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④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24., 2021.5.2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54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본조신설 2016.8.30.]

[제목개정 2020.2.24., 2021.5.27.]

제2관 신분보장

제39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2012.12.28., 2016.5.1., 2016.5.19., 2020.12.22., 2021.5.27.)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제40조(휴직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6.5.1., 2020.12.22., 2021.5.27.)

1. 제39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9조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9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9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9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39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제39조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9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9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9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9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39조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한다.

제41조(휴직 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③ 제39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21.5.27.)

제42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39조제1호의 사유로 휴직한 교원에게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22., 2021.5.27.)

② 제39조제5호의 사유로 휴직한 교원에게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③ 제3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로 휴직한 교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5.27.)

제43조(직위의 해제)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30., 2021.5.27.)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른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6.8.30., 2021.5.27.)

③ 직위해제된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6.8.30., 2020.12.22., 2021.5.27.)

1.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 봉급의 80퍼센트

2.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6.5.19., 2016.8.30., 2021.5.27.)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6.8.30., 2021.5.27.)

⑥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2021.5.27.)

⑦ 삭제 (2016.8.30.)

[제목개정 2016.8.30.]

제43조의2(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27.)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幫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0.]

제43조의3(당연퇴직의 사유) 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1.5.27., 2023.8.25.)

②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8.25.)

[본조신설 2016.8.30.]

제44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27.)

제45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7.)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7.)

③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21.5.27.)

제45조의2(명예퇴직 수당)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7.)

제45조의3(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제45조의4(정년) ① 대학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이외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11.)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45조의5 삭제 (2022.3.25.)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제45조의6(특별휴가) 자녀가 있는 고등학교 교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6.23.]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19., 2021.5.27.)

제47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4.20., 2012.5.25., 2012.7.22., 2016.5.19., 2019.6.25., 2021.5.27.)

1. 대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 교원 상벌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교원의 보직 및 교원의 연수 대상자,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7조제2항에 따라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임용 제청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8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구성하되, 대학교는 7명, 고등학교는 5명으로 하고, 대학교의 교무처장과 고등학교의 교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4.20., 2012.8.30., 2012.12.28., 2018.8.13., 2020.2.24., 2021.5.27.)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제49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11.4.20., 2012.8.30., 2018.8.13., 2021.5.2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27.)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5.2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7.)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5.27.)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1.5.27.)

제52조(인사위원회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27.)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5.27.)

제53조(운영 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7.)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다음 각 호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27., 2022.3.25.)

1. 고등학교교원징계위원회

2. 대학교원징계위원회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8.30., 2021.5.27., 2022.3.25.)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고등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6.8.30., 2021.5.27., 2022.3.25.)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이 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목개정 2016.8.30.]

제54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0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6.8.30.]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1.5.2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11.26., 2021.5.27.)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5.2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7.)

제56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2021.5.27.)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9.10.28.)

제57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1.5.27.)

제57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5.27.)

③ 제57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2021.5.27.)

제57조의3(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6.5.19., 2021.5.27.)
[제목개정 2021.5.27.]

제58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5.27.)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5.27.)
[제목개정 2021.5.27.]

제59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정한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8., 2021.5.27.)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5.19., 2019.10.28., 2021.5.27., 2022.3.25.)
③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5.)
④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8., 2022.3.25.)
⑤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 2016.5.19., 2018.10.26., 2019.10.28., 2022.3.25.)
⑥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5.)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⑦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5.)

⑧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8., 2022.3.25.)

[제목개정 2021.5.27.]

제60조 삭제 (2019.10.28.)

제60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8.30., 2016.5.1., 2019.6.25., 2021.5.27., 2023.8.25.)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5.27.)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제60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8.30.]

제60조의4(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른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개정 2023.8.25.)

②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7.]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27.)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해당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개정 2021.5.27.)

제62조(운영 세칙) 교원징계위원회가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7.)

제3절 (삭제)

제63조 삭제 (97.10.31)

제64조 삭제 (97.10.31)

제65조 삭제 (97.10.31)

제66조 삭제 (97.10.31)

제67조 삭제 (97.10.31)

제68조 삭제 (97.10.31)

제69조 삭제 (97.10.31)

제70조 삭제 (97.10.31)

제71조 삭제 (97.10.31)

제72조 삭제 (97.10.31)

제73조 삭제 (97.10.31)

제74조 삭제 (97.10.31)

제75조 삭제 (97.10.31)

제76조 삭제 (97.10.31)

제4절 사무직원

제77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5.1., 2021.5.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일반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 2021.5.27.)

③ 일반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4를 따른다.

제78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전형 또는 근무 성적,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8.1., 2021.5.27., 2022.3.25.)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7.)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

정 2021.5.27.)

④ 고등학교 일반직원의 인사처리 업무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7.6.23.)

제79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고등학교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24.)**

제79조의2(특별휴가) 삭제 (2025.4.24.)

제80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7.)

제81조(신분 보장)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제81조의2(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7.)

제81조의3(일반직원 명예퇴직 수당) ①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7.)

[본조 신설 2014.8.1.]

제82조(징계 및 재심 청구) ① 일반직원에게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관할청의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및 제70조의6을 따른다. (신설 2022.3.25.)

② 일반직원의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21.5.27., 2022.3.25.)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3조(법인 사무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 관재과, 기획과 및 감사실을 두며 각 과(실)장은 4급 또는 5급의 직원으로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분장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7.)

제2절 대학교

제84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22.3.25.)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21.5.27.)

③ 대학교에 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수로 겸보하고, 대외협력부총장은 교수로 겸보하거나 교원 이외의 사람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3.1., 2010.12.9., 2012.8.30., 2018.7.1., 2018.8.13., 2021.5.27., 2023.8.25.)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국제교류본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25., 2018.7.1., 2018.8.13., 2019.11.25., 2021.5.27., 2022.3.25., 2023.8.25., 2025.4.24.)

제84조의2(직속기구) ① 총장직속기구로 국제교류본부, 비서실, 학생군사교육단, 감사팀, 발전기금센터를 두고, 부총장 직속기구로 RISE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1.4.18., 2011.11.1., 2012.5.25., 2012.7.22., 2013.3.1., 2014.8.1., 2017.3.24., 2018.7.1., 2019.10.1., 2020.4.1., 2021.5.27., 2022.1.1., 2022.3.25., 2023.8.25., 2025.4.24.)

② 본부장, 실장, 센터장,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4.18., 2011.11.1., 2012.5.25., 2012.7.22., 2014.8.1., 2017.3.24., 2018.7.1., 2019.11.25., 2020.4.1., 2021.5.27., 2022.1.1., 2022.3.25., 2023.8.25., 2025.4.24.)

③ 직속기구에는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0., 2011.11.1., 2012.5.25., 2012.7.22.)

④ 삭제 (2012.7.22.)

제85조(대학 등) ① 대학교에는 대학원, 단과대학,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이하“대학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7.22.)

② 대학 등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7.22., 2014.8.1.)

③ 대학 등에는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2.)

[본조 제목 개정 2012.7.22.]

제86조(대학본부) ① 대학교에는 교무처, 기획처, 학생처, 입학홍보처,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1.4.18.,

2011.11.1., 2012.7.22., 2014.2.6., 2018.7.1., 2021.5.27., 2022.3.25., 2023.8.25., 2025.4.24.)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副)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8., 2011.11.1., 2012.7.22., 2014.8.1., 2018.7.1., 2018.8.13., 2019.10.1., 2021.5.27.)

③ 처에는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8., 2011.11.1., 2012.7.22., 2018.7.1., 2021.5.27.)

④ 삭제 (2012.7.22.)

[본조 제목 개정 2012.7.22., 2018.7.1., 2018.8.13.]

제86조의2(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21.5.27.)

②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1.)

③ 단에는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 직제규정 및 산학협력단 정관 등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2.7.22.]

제87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 및 부설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7.22.)

③ 삭제 (2012.7.22.)

④ 각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는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 2012.7.22.)

⑤ 삭제 (2012.7.22.)

제87조의2(기타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기타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기타기관에는 필요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2.)

제87조의3 삭제 (2025.3.26.)

제87조의4(직무대리) 제84조의2부터 제87조의2까지의 보직은 해당 조항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하위 직급자 또는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 교원 등을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4.]

제88조 삭제 (2008.2.18.)

제3절 (삭제)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제89조 삭제 (2006.2.23.)

제90조 삭제 (2006.2.23.)

제91조 삭제 (2006.2.23.)

제92조 삭제 (2006.2.23.)

제4절 고등학교

제93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명과 교감 1명 또는 2명을 둔다. (개정 2021.5.27.)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21.5.27.)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7.)

제94조(하부 조직) ① 고등학교 교무 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교사로 겸보한다.

②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행정실 소속 근무자 중 최상위 직급자로 보한다. (개정 2014.8.1., 2024.4.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95조(학교운영위원회)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학교 운영위원회는 같은 법 제32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 제21조제5항에 따른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개정 2021.5.27., 2022.3.25.)

② 법인 이사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지도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2022.3.25.)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27.)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①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기 위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5.27.)

② 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7.)

제5절 정원

제97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직급 별 정원은 직원인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5.27.)

제6절 대학평의회

제97조의2(대학평의회의 설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 및 「고등교육법」 제19조2에 따라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2.24., 2021.5.27.)

제97조의3(평의회의 구성) ① 평의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20.2.24., 2021.5.27.)

1. 교원 5명
2. 직원 3명
3. 학생 2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명
5. 조교 1명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7조의4(평의회 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27.)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7.)

제97조의5(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7.)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7조의6(평의회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21.5.27.)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7조의7(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98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부산일보에 공고한다. (개정 2021.5.27.)

제98조의2(행동강령) ① 법인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동명문화학원 종사자”라 한다)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에 따른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② 동명문화학원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1. 이 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 2. 이 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③ 동명문화학원 종사자는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동명문화학원 종사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른다.

⑤ 동명문화학원 종사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사립학교법」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3.25.]

제9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 허가 : 1977. 4. 11. 문교부장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강 석 진	1910. 3.21	4	동구 좌천동 668의 2
이사	강 기 수	1924.12.15	4	남구 대연동 1731의 1
이사	강 정 남	1940.12. 3	4	동구 좌천동 668의 2
이사	강 석 엽	1923. 2. 4	2	동래구 온천동 1213의 13
이사	왕 상 은	1920. 3.31	2	중구 대청동 4가 80
이사	김 오 수	1933. 7.20	4	남구 대연동 897의 5
이사	박 영 수	1925. 5.15	2	남구 남천동 70의 7
이사	강 석 진	1917.10. 1	2	진구 부전동 272의 1
이사	홍 순 대	1934. 9.17	4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2가 303의 15
감사	현 상 태	1920. 6. 6	1	진구 부전동 418의 1
감사	강 시 봉	1934.11.21	2	진구 양정동 104의 22

부칙

(1977. 9. 21. 교육감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3조 제②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 ③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사무 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④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 1. 15.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5. 1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12. 1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 기관의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대학 교육 기관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가산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1982. 4. 8.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8. 12.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개정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0. 19.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1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1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6. 28.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8. 2. 2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8 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8. 29.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4. 3.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3. 19.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 7. 24.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1993. 12. 18.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 5.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22.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2(제90조 관련)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급에 임용된 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6. 2. 28.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9. 2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3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용된 교원은 개정 전 정관 제37조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보며 단, 1997년 9월 1일 이후 임면되는 교원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3. 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동명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동명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10. 2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20.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25.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 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칙

(2000. 9. 2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2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28.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02.1.1.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을 적용하되, 근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정년보장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3년
4. 전임강사 2년

부칙

(2003. 3. 1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17.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및 제91조의 개정 규정은 2003년 5

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6878호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 교육 기관의 교원 임용과 관련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 ③ (대학 교육 기관의 교원 임용 기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의 임용 기간은 제37조 제2항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 5. 2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 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폐지되는 동명정보대학교는 201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폐지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들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은 동명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 2. 폐지되는 동명대학은 2008년 2월 28일(단, 2년제 과정은 200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폐지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들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은 동명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 ③ (학생에 대한 조치)
 - 1. 동명정보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는 다른 산업대학 또는 동명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동명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동명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동명정보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동명정보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2006년 3월 1 일자로 동명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기타) 폐교되는 동명대학 및 동명정보대학교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명대학교 총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

부칙

(2006. 4 . 2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9.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2009. 2. 2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2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2006.2.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1183)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에 의하여 폐지된 동명정보대학교는 개교일로부터 2014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폐지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들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 부 등은 동명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단, 동명정보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 또는 동명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5. 2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부칙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84조 제4항, 제8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2012년 4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7. 2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84조의2 내지 제87조의2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관 제37조 개정 시행 당시 종전 정관에 따른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직급을 전환한다.
 - ②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전환하는 교원의 재임용은 전임강사 임용기간 만료일에 하고, 재임용시 임용기간은 조교수 임용기간을 적용한다.
 - ③ 정관 제3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관한 경과사항은 동명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직원보수규정, 전임교원연봉제운영규정 등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2012. 9.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11.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 제1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2006.2.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1183)에 의하여 폐지된 동명정보대학교는 개교일로부터 2015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폐지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들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은 동명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단, 동명정보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 또는 동명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4. 29.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5.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8.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28.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4.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16. 9. 5.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9.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감사의 변경된 임기는 부칙 제1항의 시행일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3. 29.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9.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7.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6.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0.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6.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20.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8.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징계 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9. 9. 26.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30.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1. 28.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2. 28.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3. 31.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02.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사립학교법시행령」 시행(2020.9.25.) 전에 선임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제3조(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사립학교법시행령」시행(2020.9.25.) 전에 이사회의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2. 29.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정관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1. 6. 2.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84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84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1. 12. 28.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5.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4항,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21조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으로 재임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서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제59조제1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부칙

(2023. 9. 1.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3항 및 제4항,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30.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6.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4. 1.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5. 7.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 제84조제4항,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별표 1) (개정 2012.8.30., 2016.5.1.)

법인 일반 직원 정원

총 계 (11 명)

일반직 계 11 명

2급	1 명
3급	1 명
4급	2 명
5급	2 명
6급	2 명
7급	1 명
8급	1 명
9급	1 명

(별표 2) (개정 2014.4.24., 2016.5.1., 2019.3.20.)

학교 일반 직원 정원

가. 동명공업고등학교

총 계 (12 명)

일반직 계 12 명

5급	1 명
6급	1 명
7급~9급	10 명

나. 동명대학교

총 계 (140 명)

일반직 계 107 명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직 계 33 명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